



농어가의 경영안정, 재해보험과 함께

벌써 10월의 문턱인데 초여름 날씨가 여전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농사짓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가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까지 가중된다면 농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현재 세계 54개국에서 자연재해가 농가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농업재해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다. 재해보험은 초기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수확량 손실을 보상하는 형태로 도입되어 품질보장 방식 등을 거쳐 농가의 조수익을 보장하는 수입보험으로 발전되었다. 현재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농어업 재해보험이 일반보험과 크게 다른 점은 정부가 보험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라는 것이다. 즉, 농어업 부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금 사업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다만, 기존의 보조금 사업과는 달리 정부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보험'이라는 시장에서 검증된 방식을 채용하여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2008년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불가항력적인 농어가의 손실을 보상해줌으로써 농어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1997년부터 실시 중인 가축공제에도 정부가 공제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를 시작으로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15개 농작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농가의 경영여건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입농가의 26%인 3만9천 농가에 총 2천6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실제로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3.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일례로 지난해 경북 의성의 한 사과 재배농가는 339만 원을 들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우박피해 등으로 결국 1억8392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상재해 대폭 확대**

올해 9월부터 "밭·참다래·지두" 품목 추가 및 보상대상 재해를 대다수 자연재해로 확대

2007.7.27일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개정률 통해 현행 7개 품목(사과·배·포도·단감·딸기·감·복숭아)인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밭·참다래·지두" 3개 품목을 추가하여 1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재해보험이 농어업 분야의 경영안정장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대다수 농작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과수보험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벼, 시설채소 등 농가소득 비중이 높은 주요 작물에도 재해보험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2009년부터는 벼 재해보험을 시범실시하고, 2011년까지 30여개 농작물로 보험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도 해상 가두리 양식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현재 품목별·지역별 가입률 편차를 줄이고, 평균 가입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병충해를 포함하여 보상재해를 폭넓게 확대하는 한편, 품질보장방식 도입 등 보험상품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하여 종합적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농어업 부문 재해보험을 통합함으로써 보험가입에서 보험금지급까지 절차가 간소화되고,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농어업인의 보험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법의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농어가의 경영상태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는 원유를 비롯한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그 결과가 개별 농어가에서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농어가의 경영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입보험 형태의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농어가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기 전에는 농어업인이 희망하는 수입보험의 도입은 요원하다. 농어업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